서부지방산림청 순천국유림관리소 공고 제2023-30호

국유임산물(숲가꾸기생산재-장안리) 매각 입찰 공고(3차)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산물 소재지	수종 및 재종	수량		용도	반출 기간	기초금액 (천원)	비고
		본수(본)	재적(㎥)				
계		17,933	1,060.66				
전남 순천시 송광면 장안리 산212 외13	리기다소나무	89	5.73	칩,펄프	인도일로부터 3개월	58,500	공개경쟁입찰
	중부지방소나무	43	2.93	칩,펄프			
	편백	554	85.78	제재			
	편백	12,723	766.18	칩,펄프			
	삼나무	92	11.40	칩,펄프			
	낙엽송	16	1.21	칩,펄프			
	기타활엽수	4,416	187.43	칩,펄프			

2. 입찰방법: 일반경쟁 입찰(전자입찰)

가. 본 입찰은 한국자산관리공사 전자자산처분시스템(이하 '온비드'라 합니다.)으로만 진행되오니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온비드주소 www.onbid.co.kr)

나.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온비드'에 회원으로 가입하여야하고 공인인증기관에서 발급받은 공인인증서를 등록한 자만 참여할 수 있으며, 입찰화면에서 입찰서를 제출하는 방법으로 합니다.
(시스템 장애 등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개찰일시 연기가능)

3. 입찰등록 및 입찰

가. 전자입찰개시일시: 2023. 05. 24. (18:00)

나. 전자입찰마감일시: 2023. 06. 01. (18:00)

다. 전자입찰개찰일시: 2023. 06. 02. (09:00) 입찰집행관 PC

4. 낙찰자 결정 방법

가. 2인 이상의 유효한 입찰로서 예정가격이상 최고가격입찰자.

나. 개찰결과 동일가격 입찰자가 2인 이상인 경우 '온비드' 무작위추첨에 의해 결정함

5. 입찰참가자격

가. 입찰등록일 현재 우리 관서에 체납액이 없고 입찰등록을 필한 자

나. '온비드' 회원으로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6조 규정에 의한 부정당업자가 아닌 자

※ 부정당업자제재 중에는 대리인으로도 입찰에 참가할 수 없음.

6. 현장 설명 안내

가. 일시 : 2023. 05. 31.(수) 10:00

나. 장소 : 전남 순천시 송광면 장안리 산284 외6

※ 14:00까지 집결지(내비게이션 : **전남 순천시 낙안면 목촌리 745에 집결**하여 현장까지 이동(참석예정자는 경영자원조성팀(061-740-9331~4)으로 사전 연락)

다. 주의사항: **반드시 현장 설명에 참석하여 본 물건에 대한 자세한 정보를 얻은 후 응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7. 국유임산물 반출 관련 사전 유의사항

가. 본 입찰에 참여하는 시점에서 입찰자는 사전에 현지를 답사해 물건 및 현장 상태(매각 수종별 수량, 품등 및 반출여건 등)를 확인하였으며, 이의를 제기할 의사가 없고 모든 계약조건에 동의한 것으로 봅니다. 아래 내용을 숙지하지 못해 발생한 불이익에 대한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1) 본 공고문에 적힌 내용
2) 국유임산물 매각 계약서(붙임 1)의 내용 및 계약조건
3) 계약 특수조건(붙임 2)
4) 입찰하기 전에 반드시 현지를 답사하여 생산량 및 수량 품등, 반출여건 등 제반요건을 확인

나. 현장 확인을 하지 않고 응찰 시 발생한 제반사항에 대한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음을 반드시 유념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 **산물반출시 매수인은 반드시 반출기간 내에 매수한 임산물을 국유림 밖으로 반출**하여야 하며, 임도, 농로 및 사유지 등을 경유하는 구간은 저속주행의 반출을 요하고, 작업 시 발생되는 안전사고 및 교통사고 등에 대하여는 매수자가 책임처리 하여야 합니다.

라. 본 임지의 소나무류 생산재에 관해서는 우리 국유림관리소 보호팀(☎ : 061-740-9341~5)에 반출신청서를 제출하여 극인을 찍은 후 반출하시기 바랍니다.

마. 매수자는 대금납부 후 납입 영수증을 우리 국유림관리소 경영팀(경영자원조성팀 ☎ 061-740-9331~4, fax : 061-740-9329)으로 제출하시어 임산물을 인도받으신 후 계약상의 의무 및 관계법령을 철저히 이행하여야 합니다.

바. **국유임산물 반출을 위한 운반로 시설 시에는 경영자원조성팀과 반드시 사전에**

협의를 진행(담당자 : 061-740-9331, 공남진 주무관)하시고, 허가를 득하신 경우에는 시설 완료 후 반드시 서면으로 준공신청서를 제출하고, 준공검사를 받은 후 국유임산물을 반출해야 합니다.

「국유임산물 매각예정가격 사정기준 등 시행요령」 제04조(임산물 운반로등의 시설등) 제4항

사. 임산물의 반출 완료 후에는 임산물 운반로에 적정간격을 유지하여 횡단개거(물길 끊어주기)를 설치하여야 합니다.

아. **임산물 반출시 사유지 사용에 따라 발생하는 대금은 매수자가 처리해야 합니다.**

자. **사업실행(생산재 반출, 운반로 사용 등) 중 발생된 민원은 매수자에게 책임이 있으며, 민원이 발생되지 않도록 현장관리에 철저를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8. 입찰서 제출

가. 입찰서의 제출은 '온비드' 입찰화면에서 입찰서를 '온비드'로 송신하는 방법으로 하되, 입찰서의 제출시간은 입찰서가 '온비드' 서버에 접수된 시점을 기준으로 합니다.

나. 입찰서를 제출하시면 별도의 입찰참가 신청을 하지 않아도 됩니다.

다. 본 입찰은 동일한 물건에 대하여 동일인이 1회에 한하여 입찰이 가능하며 동일인이 2회 이상 입찰서 제출 시는 모두 무효 처리되며, 2인 이상의 공동참가는 불가능합니다.

9. 입찰보증금 납부 및 귀속

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7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43조에 의하여 입찰금액의 100분의 5에 해당하는 입찰보증금을 전자입찰 마감시간까지 '온비드' 입찰화면에서 입찰자에게 부여된 은행계좌에 입찰보증금을 납부하여야 합니다.

나. 낙찰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소정기일 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할 때에는 입찰보증금은 우리 관리소에 귀속됩니다.(다만 입찰보증금을 전자보증서로 납부한 경우에는 당소에서 서울보증보험(주)로부터 보험금을 수령하여 귀속함),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 입찰보증금 납부 시 '온비드'에서 입찰서 제출 시 명기된 보증금 전액을 일시불로 납부(분할 납부 불가)하여야 하며, 입찰보증금을 창구에서 수표로 입금하는 경우에는 창구은행이 발행한 수표만 입금 가능합니다.

※ 전자입찰서 제출 및 보증금 납부일시까지 지정계좌에 보증금 미입금 시 입찰 무효처리합니다.

라. 입찰보증금은 은행창구에서 입금창구은행 이외의 타은행이 발행한 수표를

입금하는 경우와 입찰보증금액(입찰금액의 100분의 5)보다 미만인 경우, 보증금을 분할하여 입금하는 경우에는 정상적으로 입금처리가 안됩니다.

마. 보증금 납부여부는 입찰자가 '온비드'화면에서 직접 확인하여야 하며, 이를 확인하지 아니하여 입찰자가 입은 불이익은 본인책임 입니다.

10. 입찰무효에 관한 사항

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4조 및 '온비드'시스템상의 회원약관 및 인터넷입찰참가자준수규칙에 위배한 입찰은 무효입니다.

나. 입찰참가자격이 없거나 소정기일까지 입찰보증금을 납부하지 아니하고 한 입찰

다. 2인 이상의 유효한 입찰자가 없을 경우

라. 1인이 수인의 공인인증서를 차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법률 시행규칙」제44조 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무효인 입찰에 해당되며, 당해 입찰자(인증서 차용자 및 대여자)는 부정당업자 제재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11. 계약조건

가. 낙찰자는 낙찰일로부터 10일 이내에 낙찰금액 100분 10이상의 계약보증금을 납부한 후 매매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계약체결일로부터 15일 이내에 매각대금 전액을 일시에 납부하여야 합니다.

나. 낙찰자가 위 "가"항 기간 이내에 매매계약을 체결하지 아니 할 경우에는 낙찰은 무효가 됩니다.

12. 청렴계약이행준수

가. 본 입찰에 참가하는 모든 업체(응찰자)는 순천국유림관리소 청렴계약 이행을 위한 청렴계약이행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나. 낙찰자는 계약 체결 시에 반드시 대표자가 서명한 청렴계약이행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13. 기타사항

가. 응찰자는 당소에 비치되어 있는 재적조서 숙지 및 현지물건 등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에 관하여 입찰 전에 이를 완전히 숙지하고 입찰에 참가하여야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한 책임은 응찰자에게 있습니다.

나. 다른 법령에 의한 요건 미비로 낙찰자에게 취득제한이나 행정, 법령 상 규제 등 불이익이 발생하더라도 우리 국유림관리소에서는 책임을 지지 아니합니다.

다. 본 입찰은 한국자산관리공사에서 구축한 '온비드'를 순천국유림관리소 국유

임산물 매각입찰에 활용하는 입찰입니다.

라. 전자입찰 참가 시 장애발생으로 인하여 전자입찰등록 및 투찰이 곤란할 경우에는 투찰시간 마감 24시간 전에 전자자산처분시스템(온비드)에 문의해 주시기 바라며, 이를 행하지 않고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마. 기타 입찰등록에 관한 문의는 운영지원팀(061-740-9311), 매각임산물에 관한 문의는 경영자원조성팀(061-740-9331)으로 문의하시기 바라며 입찰참여 및 투찰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온비드' 홈페이지 www.onbid.co.kr 또는 전화 02)3420-5000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바. 입찰참가자는 입찰자 유의사항을 꼭 읽어보시고 입찰에 응하시기 바랍니다.

위와 같이 공고함.

2023년 5월 24일

순천국유림관리소장

<붙임1>

■ 국유림의 경영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19호서식] <개정 2019. 11. 21.>

국유임산물 매각계약서

(제1쪽)

임산물 소재지	소재지	지번	지목	경영계획구	임반(산림경영계획 수립을 위해 구획한 산림 기초 단위)·소반(임반을 지형지물, 유역경계, 시업상 취급에 따라 구획한 단위)
반출(벌채)기간	인도일부터 개월 이내				
채취(벌채)면적	㎡				

임산물 종류	수량				용도
	본수(본)	입목재적(입목 나무부피)[㎥]	조재(造材, 재목 만드는 것)/제탄(製炭, 탄 제조하는 것)비율(%)	매각수량(생산지정)[㎥, 톤(t)]	

매각대금	원
계약보증금	원

위 계약이 체결되었음을 증명하기 위하여 계약담당관과 매수인은 이 계약서를 2부 작성하고 각자 기명날인한 후 1부씩 나누어 보관한다.

년 월 일

계약담당관 인

매 수 인

성 명 인

생년월일

주 소

주: 입목·원목 외의 경우에는 매각대상 국유임산물의 종류에 맞는 용어·단위로 변경하여 작성한다.

제1조(대금납입) 매수인은 매각대금을 소관 관서의 세입징수관이 발행하는 납입고지서에 따라 납부하기로 한다. 다만, 매수인의 신청에 따라 계약담당관이 부득이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최초 대금납입 기한을 넘지 않는 범위에서 1회에 한정하여 납입기한을 연기할 수 있되, 이 경우 매수인은 납부해야 할 금액에 실제 연체한 일수에 대한 「국유재산법」 제73조에 따른 연체료를 더하여 납부해야 한다.

제2조(임산물의 인도) ① 계약담당관은 대금납입을 확인한 후 매수인에게 임산물의 인도를 통보하고 그 날부터 15일 이내에 해당 임산물을 인도해야 한다.

② 임산물의 인도는 벌채구역위치도, 벌채구역도 및 매목재적조서의 사본을 첨부한 임산물 인도증을 발급하는 방법으로 한다.

제3조(임산물의 수령) 매수인은 임산물을 인도받은 후에는 임산물의 수량, 품질 또는 산림면적에 착오가 있거나 그 물건에 하자가 있는 경우 이의를 신청할 수 없다. 다만, 계약담당관의 중대한 과실이 있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제4조(임산물의 반출) ① 매수인은 반출기간 내에 매수한 임산물을 국유림 밖으로 반출해야 한다. 만일, 벌채구역 안에 미벌채목이 있을 경우에는 반출기간 내 입목의 생장기간에 해당하는 4월부터 10월까지는 다음의 기준에 따라 생장량에 해당하는 대금을 매수인이 별도로 납부하기로 한다. 다만, 솔잎흑파리 피해임지로서 피해정도가 "심"으로 판정된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o 생장량 대금＝1㎡당 단가×미벌채 재적×0.05×생장기간 해당 개월 수/7

* 1㎡당 단가는 매각 시 산정한 예정가격 단가와 계약 단가 중 높은 가격으로 한다.

② 제1항의 기간은 매수인이 임산물을 인도받은 날(인도받지 않은 경우에는 그 기간의 만료일)을 시점으로 하며, 제1조에 따른 연체금을 지정된 기간 내에 납입하지 않은 경우에는 연체금 납입지연 일수를 제1항의 기간에서 공제한다.

제5조(미반출 임산물의 귀속) 매수인이 매수한 임산물을 반출하지 않은 경우에는 그 임산물에 대한 권리를 포기한 것으로 보고 해당 임산물은 국고에 귀속된다. 다만, 매수인이 대부 또는 사용허가 구역 안에서 생산된 임산물을 같은 임지 안에서 사용하기 위하여 반출포기서를 제출한 경우에는 반출이 완료된 것으로 본다.

제6조(계약해제) 소관 관서의 장은 매수인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이 계약을 해제할 수 있으며, 이 때 계약보증금과 이미 납부된 매각대금 및 매각대상 임산물을 국고에 귀속시킬 수 있다.

1. 납부기한까지 매각대금을 납부하지 않은 경우
2. 산림관계법령이나 계약상의 의무를 위반한 경우
3. 임산물 수령 후 3개월 내에 임산물 반출을 위한 작업에 착수하지 않거나 3개월 이상 임산물 반출을 위한 작업을 중지한 경우. 다만, 기상 상황에 따른 장애로 인한 경우는 제외한다.
4. 인도받은 임산물 외의 임산물을 채취·반출·처분하거나 임산물을 인도받기 전에 임산물을 채취·반출·처분한 경우(종업원의 행위를 포함한다)

제7조(계약보증금의 반환) 계약보증금은 계약담당관이 현장검사를 실시하고 계약해제사유의 발생 여부를 확인한 후 반환한다.

제8조(매각대금의 반환) 계약담당관은 매각대금의 반환사유가 발생한 경우 현장검사를 실시하고 「국유림의 경영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8조제2항제2호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0조제2항에 따라 매각대금을 반환할 수 있다.

제9조(벌채목의 표시) 골라베기 및 솎아베기의 경우는 가슴높이 부분에 적색 페인트로 표시한 입목을 매각대상 임산물로 한다. 다만, 모두베기 및 모수작업의 경우와 벌도목(베어진 나무)·원목·굴취수목 및 목탄 등으로 매각대상 임산물의 표시를 달리한 경우에는 임산물 인도 시에 그 표시방법을 알리기로 한다.

제10조[수라(修羅, 나무운반미끄럼틀)의 설치] 매각대상 임산물을 반출하기 위해 설치하는 수라(修羅, 나무운반미끄럼틀)는 목(木)수라 또는 플라스틱수라에 한정한다.

제11조(임도시설) 매수인은 매수한 임산물의 반출에 필요한 임도시설 등을 설계서에 따라 설치한 경우 그 공사완료 즉시 계약담당관에게 서면, 구두 또는 유선으로 통보하여 계약담당관의 검사를 받아야 하며, 계약담당관은 그 검사 결과 공사가 설계서와 다르게 된 경우에는 매수인이 이를 보완토록 해야 한다.

제12조(반출완료 통보) 매수인은 매수한 임산물의 반출을 완료하였을 때에는 즉시 계약담당관에게 서면으로 그 사실을 통보해야 한다. 다만, 제5조 단서에 따른 반출포기서를 제출한 경우는 예외로 한다.

제13조(국유림의 대부 또는 사용) ① 매수인은 매수한 임산물을 채취·가공 또는 운반하는 시설을 설치하기 위하여 필요한 다음의 국유림에 대해서는 이 계약에 다음 사항을 부기함으로써 「국유림의 경영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1조 또는 「산지관리법」 제15조에 따른 대부·사용허가 신청 또는 산지전용신고(대부 또는 사용허가 구역 안에서 산림형질변경이 필요한 경우로서 산림형질변경지 실측도를 첨부한 경우에 한정한다)를 갈음한다.

임지 소재지	지번 [임반(산림경영 계획 수립을 위해 구획한 산림 기초 단위)·소반(임반을 지형지물, 유역경계, 시업상 취급에 따라 구획한 단위)]	공부면적 (㎡)	대부·사용허가 면적(㎡)	산지전용면적 (㎡)	기간	비고

② 매수인은 제1항에 따른 국유림으로서 최초 대부·사용허가 신청 또는 산지전용신고를 한 국유림 외의 구역으로 변경하거나 이를 추가하려는 경우에는 「국유림의 경영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7조제6항에 따른다.

제14조(시설물의 철거) 매수한 임산물의 채취·가공 또는 운반을 위해 매수인이 국유림 안에 설치한 시설(임도시설은 제외한다)의 철거가 필요하여 계약담당관이 이를 요청하는 경우에는 매수인은 이를 철거해야 한다.

주: 계약담당관과 매수인은 필요한 경우 서로 합의 하에 이 계약서의 일부 조항을 가감 또는 변경할 수 있다. 계약담당관에는 관계 공무원을 포함한다.

<붙임 2>

국유임산물 매각 계약 특수조건

1. 본 특수조건은 『2023년 국유임산물 매각계약』 계약과정 및 물건 반출과정 전반에 적용한다.

2. 매수자는 매각대금을 납부한 후 물건인도를 요청할 수 있으며, 물건을 인도받은 날로부터 반출완료 후 적지검사가 종료되기 전까지 발생할 수 있는 모든 민사·형사상 책임은 매수자에게 있다.

3. 소나무류 이동 시 「소나무재선충병 방제특별법 시행규칙」 제5조에 따라 작업 전에 **소나무류 생산확인 신청서**(소나무재선충병 방제특별법 시행규칙 별표 제6호 서식)를 담당공무원에게 제출해야한다.

4. 산원지에 작업로(임산물 반출로)의 시설은 산림훼손이 최소화되도록 매수자가 설치 및 보수를 실행하여야 하며, 추가적인 운재로의 시설은 지양하여야 한다. 작업로의 시설이 완료되면 관리소에 작업로 준공검사를 득한 후 임산물을 반출할 수 있다.

5. 물건 반출 후 재해예방을 위해 운재로의 보수, 배수로정비 등은 매수자가 실행해야한다. 반드시 작업지역의 산간계류부분 운재로 노면에 20m~30m 간격으로 횡단개거의 설치 등 수해예방조치를 한다.

6. 허가 없는 추가 운재로 개설 및 위치 변경, 벌채 경계 및 잔존구(수림대 및 군상)를 훼손했을 경우 관련법에 따라 처벌 받을 수 있다.

7. 사유지를 경유해야 할 경우, 매수자는 반출에 필요한 모든 사항을 이해당사자와 협의 후 반출해야하며, 이 과정에서 발생한 민원은 매수자가 직접 처리한다.

8. 산물반출 시 임도, 농로 및 사유지 등을 경유하는 구간은 저속주행의 반출을 요하며, 작업 시 발생되는 안전사고 및 교통사고 등에 대하여는 매수자가 책임처리 하여야 합니다.

9. 생산재 반출을 완료한 뒤 매수자는 반드시 서면으로 반출 완료계를 담당공무원에게 제출해야하며, 이후 적지검사를 받아야 한다.

10. 적지검사 시 계약조건 및 담당공무원이 요청한 사항을 이행하지 않은 사실을 발견했을 경우, 매수자에게는 이를 지체 없이 즉각 보완하여야할 의무가 있다.

<붙임 3>

청 렴 계 약 이 행 서 약 서

우리 순천국유림관리소에서는 부패 없는 깨끗하고 투명한 행정이 지역사회 발전과 국가 신인도 제고에 중요한 관건이 됨을 깊이 인식하여, 국유임산물 매각 계약 과정에서 청렴계약을 시행하고자 합니다.

□ **계약명 : 국유임산물 매각 계약**

《계약자》

1. 본인은 위 계약과 관련하여 계약사항을 성실히 이행할 것이며, 불법행위 등 어떠한 행위도 하지 않겠습니다.
2. 위 계약의 전 과정을 통하여 어떠한 경우에도 뇌물공여나 청탁 등(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으로 관계 공무원을 회유하여 편의 제공 등으로 불법을 묵인하도록 요청하지 않겠으며, 관계 공무원의 어떠한 불법, 부당한 요구에도 단호히 이를 거부하겠습니다.
3. 위의 서약은 본인의 명예를 걸고 반드시 지킬 것이며, 만약 이를 위반한 사실이 밝혀질 경우 관계 법령에 따른 처분은 물론 계약사항에 대한 어떠한 처분에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을 서약합니다.

《담당공무원》

1. 우리 순천국유림관리소에서는 위 계약의 이행과 관련된 모든 공무원은 관계법령의 규정과 절차를 투명하고 공정하게 집행하겠습니다.
2. 우리 관계 공무원은 귀하(사)와의 계약을 이행함에 있어 법령과 계약규정 이외의 어떠한 부당한 요구도 하지 아니할 것이며, 어떠한 경우에도 금품의 요구 등(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이나 편의의 제공을 요구하지 않겠습니다.
3. 만약 위 계약과 관련하여 어떠한 금품의 요구 등(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이나 편의 제공을 요청하는 사례가 있으면 이를 단호히 거절하여 주시고, 즉시 그 사실을 제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보에 대해서는 비밀을 보장하고 이로 인하여 어떠한 불이익도 받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2023년 월 일

매 수 인 성 명 :

담당공무원 성 명 :

순천국유림관리소장 귀하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